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30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출장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 시설규모 : 200 m^2
- 주요시설 : 교육관, 강의실, 사무실

5) 민간위탁기간 : 3년(2019. 10. 1~2022. 9. 30.)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1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30백만원, 시설리모델링 및 교구 등 구입비 562백만원, 관리운영비 18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 설치되어 금년 10월부터 운영될 청소년시설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3년(2019.10.1.~2022.9.30.)간 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¹⁾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 시설규모 : 200m²
- 주요시설 : 교육관, 강의실, 사무실
- 민간위탁기간 : 3년(2019.10.1~2022.9.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61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²⁾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8개의 성문화센터(시립6, 구립1, 민간1)가 운영되고 있음.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

연번	구분	시설별	면적 (㎡)	소재지	직원 현황	위탁기간	운영단체
1	시립	아하!청소년 성문화센터	668	영등포구 영신로 200	17	16.9.9~19.9.8	(재)한국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2	시립	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	198	광진구 구천면로 2	5	18.7.1~21.6.30	(사)홍사단
3	시립	창동청소년 성문화센터	181	도봉구 노해로 69길132	5	18.7.1~21.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4	시립	드림청소년 성문화센터	300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5	18.7.1~20.6.30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5	시립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158	중랑구 면목23길 20	5	17.12.1~19.6.30	(사)탁틴내일
6	시립	동작청소년 성문화센터	340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5	18.11.1.~20.6.30.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7	구립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270	송파구 중대로4길 4	5	18.6.1.~20.5.31.	(사)한국청소년연맹
8	민간	탁틴청소년 성문화센터	버스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5	19.1.1.~19.12.31.	(사)탁틴내일

- 최근 무분별한 성 정보의 범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성희롱·성폭력)와 성문제(원조교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성문화센터의 추가적인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민간위탁사무는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및 상담, 출장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과 센터의 관리·운영으로, 상담과 교육은 전문³⁾성과 함께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⁴⁾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무라고 보여져, 성문화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시설은 청소년시설로,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어, 성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청소년단체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위탁업체 모집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바, 평생교육국의 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선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건비(3천만원, 3개월분), 사업비(5천만원), 시설비(4억2천만원), 관리운영비(1천8백만원) 등 총 6억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5명의 인력(센터장1, 팀장1, 팀원3)으로 아동·청소년, 양육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관련 세부예산 〉

(단위:천원)

		계	산출내역
소 계		610,000	
인건비	운영인력 인건비(5인)	30,000	5인, 3개월 인건비
사업비	소계	562,000	
	교구구입 및 콘텐츠 제작	50,000	기존 시설 교구 구입 내역 준용
	교육시설비(리모델링)	474,000	2,370,000원(1m ² 당)× 200m ²
	집기구입	38,000	컴퓨터, 사무용가구, 강의실 책걸상 등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18,000	6,000,000원×3개월

- 성문화센터의 사업목표는 교육생 수 또는 상담자수로 산출되어 있어, 성문화 센터는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제 강사 등을 운영하여 출장 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바, 강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균일하고 높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교육방향 및 교육자료, 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성과 평가는 교육생 수로만 계산하는 정량적 평가를 탈피하여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성과위주 사업추진의 폐해를 방지하고, 실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 한편, 성문화센터의 기능이 성교육으로 치중되고 있어, 성상담기능은 축소되고 있는바, 성문화센터가 성관련 상담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성문화센터의 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 자치구, 보건소 등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30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출장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 시설규모 : 200㎡
- 주요시설 : 교육관, 강의실, 사무실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19. 10. 1~2022. 9. 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1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30백만원, 시설리모델링 및 교구 등 구입비 562백만원, 관리운영비 1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2133-4130)